

동반·나눔의 따뜻한 금융행정

- 지난 5년,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



대통령실

“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하는
금융정책을 써서는 안 됩니다.

.....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사려 깊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2.7.19,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말씀

”

CONTENTS

목 차

동반·나눔 금융을 위한 금융행정 혁신

1.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06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07
3.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08
4.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0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1
6. 대부업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2
7.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및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3
8.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15
9. 선량한 보험 계약자를 돕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에 16
힘썼습니다
10. 한국의 회계 투명성을 국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7
11.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8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 혁신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듭되는 세계 경제위기는 기존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창의와 혁신을 촉진해서 높은 성장을 이끄는 큰 장점이 있지만,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는 양극화의 문제와 시장 내·외부 요소의 잦은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개념을 천명한 것도 이러한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시장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정철학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켜나가면서,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해왔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배가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정상적인 대출심사를 거친 기업대출에 대해 은행 임직원에게 사후적으로 부실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면책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정책 금융 지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과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중소·영세 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전환대출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이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불법 고금리와 채권 추심,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민생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방지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동반과 나눔을 위한 금융행정 혁신’ 노력은 최근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금융환경 혁신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 대 기

동반·나눔 금융을 위한 금융행정 혁신

1.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한 면밀한 실태 점검을 토대로 ‘창업·중소기업 금융 환경 혁신대책’을 마련(2012년 2월)

* 금융위원장 창업보육센터, 산업단지 등 방문(2011년 11월), 기업은행 주관 중소기업인 대상 서베이(3400명) 등 실시

- 주요 제도 개선 내용

- ① 연대보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2012년 5월 시행)

- ② 재창업 등을 통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 강화

- 신용회복위원회 내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채무 조정 및 재창업 자금 지원 실시(2012년 4월 시행)

- * 원금의 50%까지 감면, 30억 원 한도로 신규 자금 지원 등

- ③ 면책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유도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정당한 심사 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후적인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 개선

- ④ 청년창업재단을 신설(5. 30)하여 은행권의 출연재원(3년간 5000억 원)을 기초로 청년창업을 지원

- ⑤ 중소기업 금융 통합 정보 시스템(‘기업금융 나들목’) 개설(2012년 2월)
 - 기업인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제공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금융 공기업을 통해 원활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2011년간 연평균 106조 원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

	2008(실적)	2009(실적)	2010(실적)	2011(실적)	2012(계획)
합계(조 원)	80.6	104.8	104.5	108.7	106.4

■ 중소기업 신속 지원제도(Fast-Track Program) 시행

- 2008년 10월부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Fast-Track Program을 시행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Fast-Track Program을 2013년 말까지 연장
 - * 지원 실적: (2009년) 21조5000억 원→(2010년) 5조3000억 원→(2011년) 1조3000억 원

■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만기 연장 및 한도 확대 조치

- 금융위기 시 신·기보의 만기 연장 및 보증 비율(85%→95~100%) 확대
 - 이후 상향된 보증 비율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
 - * 기존 보증: (2009년) 95%→(2010년 상반기) 90%→(2010년 하반기) 85%
 - * 신규 보증: (2010년) 신용등급별 50~85% 차등 적용 (위기 이전 수준)

■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고용 창출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용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지원 규모(신·기보 등) : (2010년) 5조2000억 원→(2011년) 7조3000억 원→(2012년) 8조 4000억 원

● R&D 및 기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

* R&D 자금 공급 규모(산은, 기은) : (2011년) 9900억 원→(2012년) 1조1000억 원

* 기보 R&D 특례보증 : (2011년) 9000억 원→(2012년) 1조400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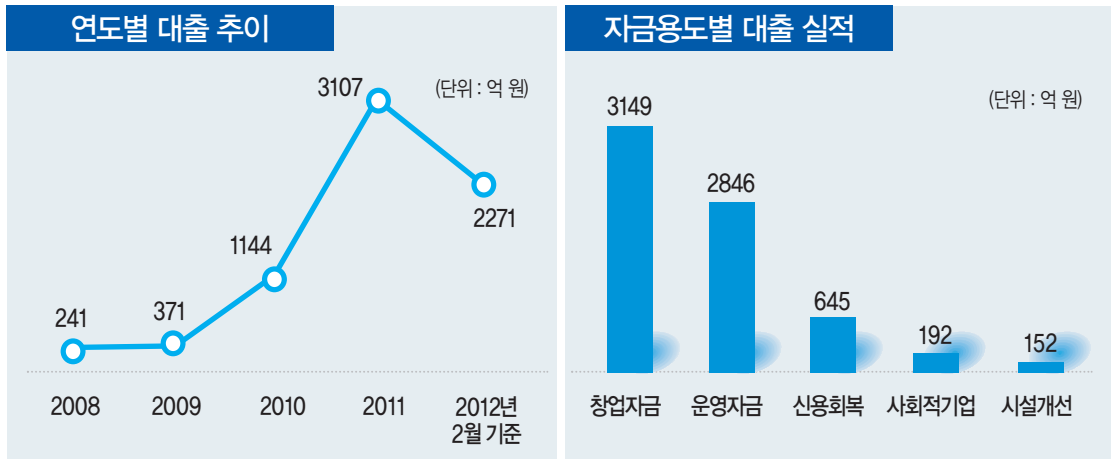
3.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의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2008년 이후 총 70만8599명에게 6조2430억 원 공급

	미소금융 (2008.7~2012.10)	햇살론 (2010.7~2012.10)	새희망홀씨 (2010.11~2012.10)
건 수	8만3046건	25만8119건	36만7434건
금 액	7134억 원	2조2889억 원	3조2407억 원

■ 미소금융 : 자활 의지가 있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에 무담보, 무보증으로 창업·사업운영 자금을 대출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 2008년부터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지원, 2009년 12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후 지원 실적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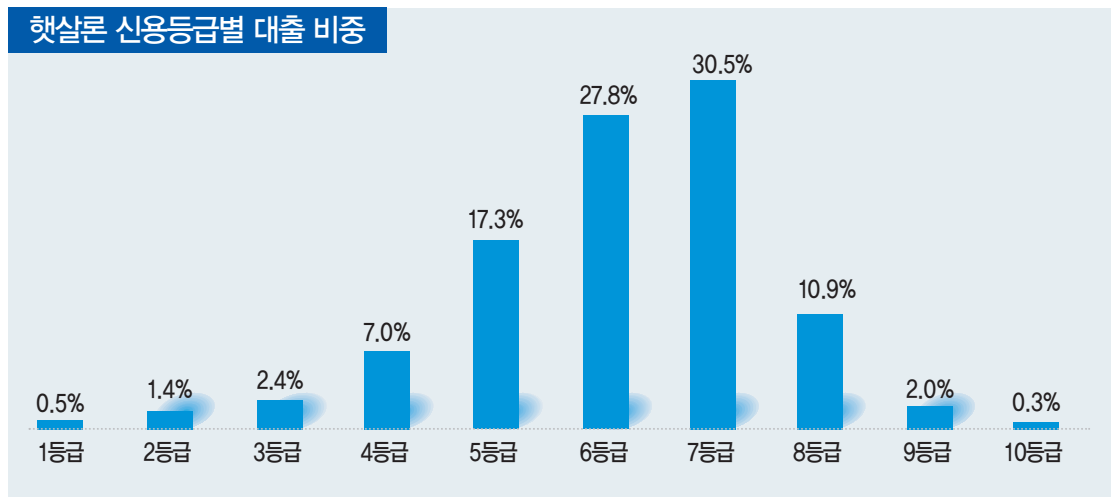
- 총 556개(미소지점 162, 기존복지사업자 13, 전통시장 상인회 381)의 대출 채널 확보
 - 미소금융지점에서 매월 점포를 방문하여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

- 미소금융 지원 성과가 큰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지원 채널을 구축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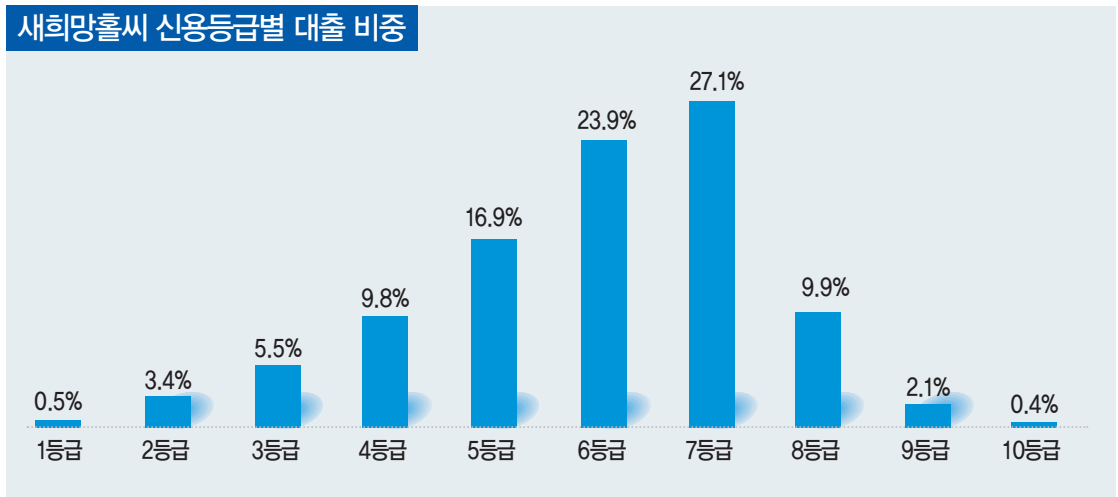
■ **햇살론**: 성실하게 경제활동 중인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생계·사업운영 자금 대출

- 정부 및 서민금융회사에서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지역신보 보증)

* 상호금융(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상호저축은행



- 새희망홀씨: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은행 권에서 서민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자금 공급



4.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을 확대
 - 2011년 1월부터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2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 2012년 1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 원 가구에도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 지원 중(2012년 중 1조5000억 원 한도 이내 공급)
 - * 2012년 5월 23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5000만 원 가구까지 지원대상 확대
- ⇒ 2008~2012년 10월까지 총 2만5600여 가구에 대해 2조3647억원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공급
-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 안정 및 주택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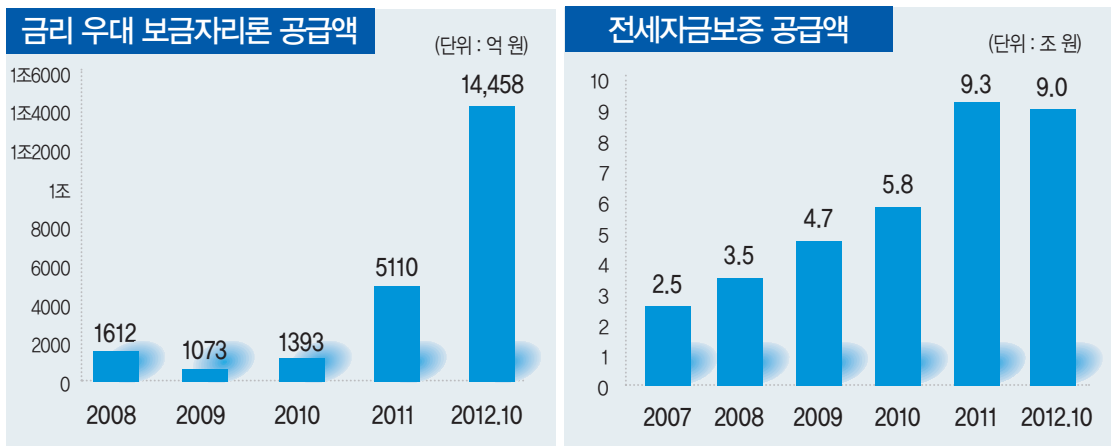
- 2010년 9월 전세자금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 조정(전세자금의 70%→전세자금의 80%)

- 2012년 2월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의 은행 전세자금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보증을 신설

-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2012년 6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

⇒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2007년 2조5000억 원에서 2011년 9조3000억 원으로 증가

- * 2012년 10월 기준 9조 원 공급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안을 마련(2012. 7. 4 발표)

- ①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 도입

- 대다수 가맹점(약 93%)이 수수료 인하·현행유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대형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도 3%p(1.5~4.5%)에서 약 1%p수준(1.5~2.7%)으로 대폭 축소

② 대형가맹점(연 카드매출 1천억 원 이상 법인)의 부당행위 금지

- 신용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조치

③ 연매출 2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상 확대(1.2억 → 2억, 1월)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1.8% → 1.5%)

- 총 가맹점의 74%인 179만개 가맹점이 혜택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추진 경과

적용 시기	중소가맹점 기준	혜택 가맹점 비중(수)
2010.4~2011.4	연매출 9600만 원 미만	54.2% (105만5000개)
2011.5~2011.12	연매출 1억2000만 원 미만	58.8% (121만3000개)
2012.1~	연매출 2억 원 미만	68.1%* (152만1000개)
2012.7~	연매출 2억 원 이하	74%* (179만2000개)

* 총 가맹점 수 : 2010년 말 194만3000개→2012년 7월 242만개

6. 대부업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 경감

-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를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쳐 10%p 인하(49%→39%)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 (2007.10) 49%→(2010.7) 44%→(2011.7) 39%

■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2009년 9월)

-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금지,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방문·전화 등 추심 행위 금지,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대형 대부업체(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에 대한 금감원의 직권검사 근거 마련(2007년 12월)
 - 금감원을 통해 2008~2012년 상반기 중 총 344건(직권검사 231건, 요청검사 113건)의 검사를 실시 → 총 422건의 위규사항 적발
- 추심 전문업체의 대부업 등록 의무화, 중요 계약사항 자필기재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2009년 1월)
-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2012년 3월 시행)
 - * 대부업 등록번호 및 상호를 광고 좌상단에 기재, 이자율 등 중요사항에 대해 글자 크기 지정(최대 글자 크기의 3분의 1 이상),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등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2012.11.21, 국회의결)

7. 보이스포싱 피해 구제 및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이스포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2011.9.30)
 - ⇒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을 받기까지 걸리던 시간(약 1년 → 약 3개월)도 단축

특별법 시행 전과 시행 후 피해구제 절차 비교

구제 절차	특별법 시행 전	특별법 시행 이후
① 피해금 인출 정지	지급정지* 요청 (피해자→금융회사) * 법적 근거 없이 금감원 지도로 운영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 (피해자→금융회사)
② 피해금 반환 요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피해자→법원)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금감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요청
③ 피해환급액 결정	정당 소유자 결정 및 환급액 산정(법원)	채권소멸 공고(2개월) 후* 피해환급금 산정(금융감독원)
④ 피해금 반환	지급정지계좌 추심명령(법원) 피해금 지급 (금융회사→피해자)	금감원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산정 후 금융회사에 통보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회사→피해자)

● 특별법 시행 이후 2만5023건에 대해 2조6506억 원 환급(2012년 10월까지)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 추진중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시행*(2012. 1. 31)

* 카드론 지연입금(2011. 12. 10~) 및 취급강화(2011. 5. 21~), 지연인출제(2012. 6. 25~),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2012. 9. 25~), 대포통장 근절방안 시행(2012. 11. 1~) 등

●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확대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2012. 4. 6~6. 3)

●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상시 협의체 마련·운영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총리훈령)' 제정·시행(2012. 5. 31)

●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 시행(2012월 12월)

8.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의 다양화 추세에 신속히 대응(2012.6)

- 테마주 관련 투자유의안내(Invest Alert)를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등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
- 금융위, 금감원 및 거래소 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강화

불공정거래 조치실적

(단위 : 건, %)

조치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3/4분기(누계)	2012.3/4분기(누계)
검찰고발·통보	115	142	138	152	102	146 (43.1)
과징금 부과	1	-	1	1	1	-
단기매매차익 통보	35	16	22	12	11	6 (△45.5)
경고 등	6	18	17	15	11	7(△36.4)
무혐의	26	23	23	29	20	15(△25.0)
합 계	183	199	201	209	145	174(20.0)

■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 테마주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2012.10)

-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이상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한 주가조작,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관련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
- 이상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 투기거래 억제 및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을 위한 시장조치* 강화
 - * (시장조치) 매매거래정지(1일) + 단일가매매(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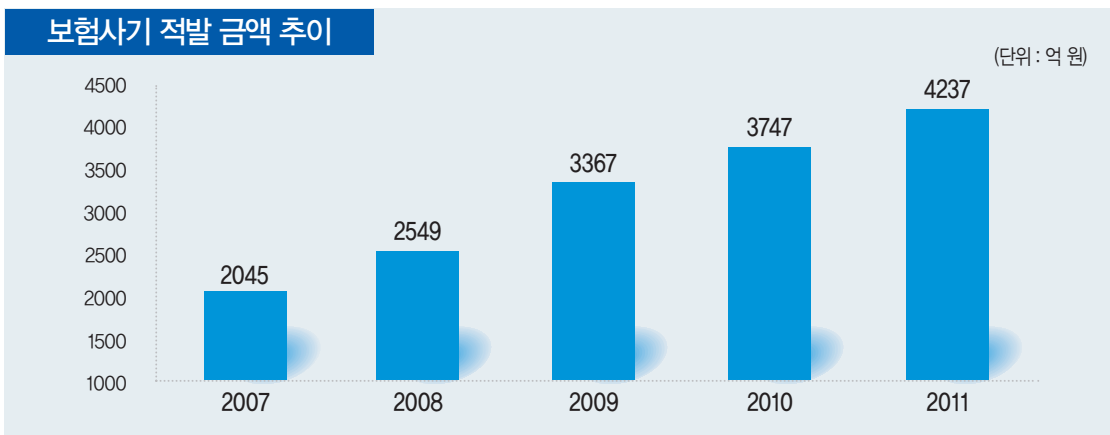
■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제도 개선으로 불공정거래 실현가능성 사전차단

- 시장경보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거래정지 확대 등 시장경보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100건 이상의 투자경고·위험종목 공표(2010~2012년)

9. 선량한 보험 계약자를 돕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에 힘썼습니다

■ 정부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받는다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험사기 근절 활동을 강화

- 금융당국, 보건당국,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 대책반'을 운영(2009년 7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



■ 자동차보험 분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 교통법규 위반 평가대상기간 확대 등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추진

→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감소하고 영업 적자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최근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완화

월별 손해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FY 2011	80.2	79.6	79.1	84.7	82.0	81.7	84.2	84.5	88.1	82.3	83.0	77.9
FY 2012	80.8	78.0	75.9	79.9	83.3	83.6						

주) 2011년 4월부터 IFRS 적용기준 손해율

10. 한국의 회계 투명성을 국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

- 세계적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IFRS를 수정없이 채택(Fully Adopt)함
 - * 전세계 IFRS를 도입한 130여개국 중 가장 모범적인 IFRS 도입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2년 3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ASB)에 한국위원이 진출
-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들이 미국·유럽 등 주요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시 IFRS 재무제표를 그대로 활용가능하며, 해외 영업경쟁에서 Korea Discount가 제거돼 글로벌 경쟁력 증대

■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한 회계 투명성의 획기적 제고

- 회계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우선 감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위험요소에 근거한(Risk-Based) 표본추출 방식을 도입(2009년)
 - * 횡령·배임 발생 기업, 우회상장기업, 잦은 최대주주 변경 기업 등 10개 위험요소를 적용 (2012년도에는 전체 대상 중 70%를 동 방식으로 선정 예정)
- 회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 (2009년 2월, 외감법 개정)
- 중대한 회계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투자자 피해 방지
 - * 2000년 대우사태 이후 처음이자 사상 2번째로 회사의 회계분식을 목인, 방조한 ○○회계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6월' 조치를 취함(2009. 9. 9)

■ 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 비상장 외부감사 의무 대상 모든 기업(자산 100억 원 이상)에 적용하였던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자산 1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
 - * 2008년 기준으로 1만8074개→3000개로 약 1만5000개 비상장 기업이 혜택
- 작성 부담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폐지(2012년)
 - * 결합재무제표 제도는 국내에만 있는 제도이며,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제도와 중복되는 등 기업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11.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 금융규제 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개편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2.7)
- ⇒ 금융소비의 전 과정(사전 정보 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 구축
 - ※ 2008년 이후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 등 개별 법, 제도 정비를 통해서도 광고 규제, 설명의무 강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

금융 소비자 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 (판매행위 규제)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 규정
 -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구속성상품 계약 체결 금지 원칙,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 (제재 강화) 과징금제도 도입 등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제재 강화
 - 설명 의무, 광고 규제 등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해당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입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분쟁조정제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예 : 500만 원 이하)은 분쟁조정 진행 중 소송 제기 금지
 -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 (금융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내에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한 준독립기구로 설치

- 금융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서비스를 강화
 -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 * 성인대상 금융교육 표준콘텐츠(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를 e-book 형태로 보급(2012.5)
 - 찾아가는 금융교육·방문 상담 실시 및 참여형, 토론형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현장 서비스 활성화
 - * 지자체와 공동(MOU체결)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교육 실시

청와대 정책소식 과월호

제138호 우리나라 방위산업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제137호 인류의 녹색미래를 책임집니다
 제136호 스마트 기상정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135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의미, 기대효과
 제134호 2012년 공공기관 열린 채용계획
 제133호 신(新)고졸 시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제132호 3대 평가사 모두 한국 신용등급 격상
 제131호 본궤도 오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제130호 피치, 한국 신용등급 15년 만에 'AA-'로 상향 조정
 제129호 사상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 의미와 기대효과
 제128호 녹색성장으로 달린 대한민국
 제127호 IPTV 가입자가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제126호 한미 FTA 100일/한·EU FTA 1년, 그 성과
 제125호 포괄수거제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124호 교통정책,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제123호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불공정거래를 개선했습니다
 제122호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과 성과
 제121호 대한민국, 세계가 평가하다
 제120호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제119호 이동신문고, 국민 고충 현장 해결사
 제118호 이제, 물 확보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제117호 올해 5월부터 연대보증 제도가 개선됩니다
 제116호 공공기관 이전, 4대강, 지역인재 채용 등 지방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115호 이명박 정부 4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제114호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제113호 중소기업을 위한 한미 FTA 100% 활용하기
 제112호 2012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22개 부처 및 4개 위원회 업무계획>
 제111호 3월 2일 농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제110호 학교폭력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제109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좋은 물건도 사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착한 소비입니다
 제108호 한미 FTA, 정확히 아시나요?
 제107호 <광역경제권정책 4년> 지역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106호 공기업들이 녹색도시·녹색건축으로 '지방시대'를 연다
 제105호 내년에는 국민 세금을 주로 일자리와 복지에 쓰겠습니다(2012년 예산안)
 제104호 국민 권익보호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제103호 4대강 새물결 준비되었습니다
 제102호 서민 체감경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1호 만5세 어린이들도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100호 한국 경제 성적표(G20 국가와 비교)
 제99호 서민과 소외계층의 안전한 '어름나기'를 최대한 돕겠습니다
 제98호 이명박 정부가 14년 동안 유예돼 온 복수노조 제도를 노사정 합의로 시행합니다
 제97호 소외되었던 이웃 2만3669명이 다시 웃었습니다
 제96호 '전관예우' 이렇게 뿌리뽑겠습니다
 제9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 서두르겠습니다
 제94호 지역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3호 대법원, 한강살리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제92호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 발전과 가치 창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91호 "농협 선진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제90호 기후 급변과 국정 대응방안
 제89호 서울정상회의의 성과 계승 및 발전을 위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주요결과
 제88호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제87호 지금은 서민 복지에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제86호 구제역,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85호 서민물가를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제84호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제83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제82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제81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제80호 법원이 한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제79호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제78호 세계 최대 시장을 연 한·EU-FTA
 제77호 인허가 규제의 틀이 100여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제76호 4대강 사업 예산의 오해와 진실
 제75호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폐휴대폰 재활용
 제74호 디지털방송 전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제73호 4대강의 진실
 제72호 1조 2천억원 규모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제71호 내년 예산! 서민희망예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70호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이 이렇게 개선됩니다
 제69호 서민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68호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제67호 규제개혁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66호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열린 사회
 특집호 물, 강, 그리고 생명이야기
 제65호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과 의의
 제64호 경제회복의 온기를 서민경제로 확산
 제63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제62호 대한민국의 녹색희망, 새만금
 제61호 서민이 편해지는 생활공감정책

청와대 정책소식 - 2009년 2월 23일 창간

편집인 -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역은인 - 최원목 국정과제1 비서관

대통령실 -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본 책자는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